

## 자산운용규정 ( 2010. 11. 25 ) 규정 제345호

2011.11.30 개 정 제359호	2022. 2.25 개 정 제462호
2013.11.29 개 정 제372호	2022. 6. 3 개 정 제470호
2014. 3.24 개 정 제379호	
2014.12.31 개 정 제393호	
2016. 5. 4 개 정 제410호	
2020.11.11 개 정 제452호	
2020.12.30 개 정 제453호	
2021. 5.28 개 정 제456호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이하 “공제회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재정의 건전성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자산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공제회법,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20.12.30 신설)

**제 3 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략적 자산배분”이라 함은 공제회 투자정책을 반영하여 자산군의 상대적 비율을 결정하는 자산배분을 말한다.
2. “전술적 자산배분”이라 함은 전략적 자산배분에 의해 결정된 자산배분 범위 내에서 변화하는 시장상황을 반영한 단기적인 자산배분을 말한다.
3. “정보자산”이라 함은 자산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공제회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나 제3자에게 유출되었을 경우 공제회의 손익 또는 자산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4. “위험관리”라 함은 자산의 건전성 유지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자산운용규정

5. “신용등급”이라 함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채권 발행기업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부여한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6. “듀레이션(Duration)”이라 함은 현재가치로 할인한 현금흐름의 가중 평균 잔존만기를 말한다.
7. “전통자산”이라 함은 주식, 채권 등과 같이 거래소나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유동성 있는 금융자산을 말한다.(20.12.30 개정)
8. “대체자산”이라 함은 사모투자, 부동산, 인프라, 헤지펀드 등 전통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를 “대체투자”라 한다.)(20.12.30 개정)
9. “파생결합증권”이라 함은 금리, 주가지수, 환율 등과 관련한 기초자산의 가격, 지표 및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되어 미리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을 말한다.(20.12.30 개정)
10. “기회자산”이라 함은 단기자금 및 전략투자를 목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을 말한다.(20.12.30 개정)
11. “단기자금”이라 함은 회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투자를 위한 대기 자금으로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단기적으로 투자되는 자금을 말한다.(13.11.29, 20.12.30 개정)
12. “전략투자”라 함은 중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한다.(20.12.30 개정)
13. “파생상품”이라 함은 시장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로부터 파생되는 자산 또는 증권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 금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거래되는 선물, 옵션 등을 말한다.(20.12.30 개정)
14. “직접운용”이라 함은 공제회 내부절차에 의해 임직원이 투자의 판단을 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20.12.30 신설)
15. “위탁운용”이라 함은 위탁운용사에게 투자재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20.12.30 신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령, 관련 제규정, 통상적인 사용례의 순에 따른다.

**제 4 조(자산운용 원칙)**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와 가치증진을 목표로 하며, 자산은 각 투자유형에 따른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제 5 조(윤리의무)** ①임직원은 자산을 운용·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원 부담금의 수탁관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자산을 운용·관리함에 있어 청렴하여야 하며 제반 법령을 준수함은 물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그 밖의 정보자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②사업담당 임원 및 주식 직접운용부서, 주식 일임운용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주식(ETF는 제외한다), 파생상품, 주식관련 채권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임기 시작 전 및 해당부서 근무 전 취득한 경우, 또는 근무 중 상속·증여, 증자, 전환권·신주인수권의 행사 등으로 취득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2.6.3 개정)

③사업담당 임원 및 주식 직접운용부서, 주식 일임운용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매매거래 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2.6.3 개정)

**제 6 조(업무수행 및 면책)** ①임직원은 이 규정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자산운용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 2 장 위 원 회

**제 7 조(운영위원회)** 공제회법 제11조 및 정관 제16조의 운영위원회는 전략적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자산배분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8 조(자산운용위원회)** ①공제회 자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자산운용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6.5.4, 20.12.30, 22.2.25 개정)

③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이사가 되고, 4인의 위원은 사업이사, 기획조정실장, 회원사업본부장, 리스크관리실장, 부동산·인프라본부장, 투자전

략팀장이 되며, 간사는 소관팀장이 된다.(16.5.4, 20.12.30, 22.2.25 개정)

④자산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술적 자산배분
2. 월별 자금배분 및 재원조달
3. 기타 자산운용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⑤자산운용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 9 조(투자심의위원회)** ①투자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16.5.4 개정)

②투자심의위원회는 9인으로 하며, 관리이사, 사업이사, 사업이사가 지명하는 2인의 직원, 5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13.11.29, 14.12.31, 16.5.4, 20.11.11 개정)

③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이사가 되며, 간사는 소관팀장이 된다.(16.5.4 개정)

④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신속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투자심의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일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20.12.30, 21.5.28 개정)

1.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 다만 다음 각 목에 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11.11.30, 13.11.29, 14.3.24, 20.12.30 개정)

가. 외부공모를 통해 내·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평가한 국내·외 투자(20.12.30 신설)

나. 파생결합증권(20.12.30 신설)

다. 국내·외 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증권 등에 대한 투자(관련 사항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20.12.30 신설)

2. 제18조에 대한 투자 중 파생상품 투자(헤지거래는 제외한다)

3. 기타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0.12.30 개정)

⑤투자심의위원회는 소집사유 발생시 위원장이 소집한다.(20.12.30 개정)

**제9조의2(투자심의소위원회)** ①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제9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심의소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한다.(21.5.28

본조신설)

②투자심의소위원회는 5인으로 하며, 관리이사, 사업이사 및 3인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투자심의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이사가 되며, 간사는 소관팀장이 된다.

④투자심의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제회가 이미 투자한 대체자산위탁운용사의 동일펀드에 추가 투자하거나 이미 투자한 대체자산위탁운용사의 동일전략의 신규펀드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기투자 금액의 200%를 초과하지 않으며 미화 기준 1억 5천만 달러 이하 또는 1,500억원 이하의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
2. 공제회가 이미 투자한 대체자산위탁운용사의 펀드와 함께 투자하는 공동투자의 경우로서 미화 기준 5천만달러 또는 500억원 이하의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

⑤투자심의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투자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 10 조(위원회 운영)** ①자산운용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투자심의소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16.5.4, 21.5.28 개정)

②제1항의 결과는 이사장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21.5.28 신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대면회의(영상, 전화 등) 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 방법은 제1항을 준용한다.(20.11.11 신설, 21.5.28 개정)

④각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결정된 사항은 이를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20.11.11, 21.5.28 개정)

⑤이사장은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20.11.11, 21.5.28 개정)

### 제 3 장 자산배분

**제 11 조(전략적 자산배분)** ①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 운용 및 향후 자금수지, 시장전망 등을 고려하여 전통자산, 대체자산, 기회자산 등으로 배분하여 운용한다. (11.11.30, 13.11.29 전문개정, 20.12.30 개정)

## 자산운용규정

1. (20.12.30 삭제)
2. (20.12.30 삭제)
3. (20.12.30 삭제)
4. (20.12.30 삭제)
5. (20.12.30 삭제)
6. (20.12.30 삭제)
7. (20.12.30 삭제)

②제1항의 세부 자산군 분류와 정의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20.12.30 개정)

③전략적 자산배분은 연간 단위로 재검토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며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분한다.(20.12.30 신설)

**제 12 조(자산운용계획)** ①공제회는 제11조의 자산배분 목표 및 시장전망과 자금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연간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자산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전술적 자산배분)** 공제회는 전략적 자산배분을 자산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전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산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4 장 자 산 운 용

**제 14 조(주식 직접운용)** 주식 직접운용은 운용전략을 수립하고 투자회사의 재무 상태, 보유주식의 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운용한다.

**제 15 조(채권직접운용)** ①채권은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하여 채권 종류별, 발행자별, 만기구조별 등으로 분산하여 투자한다.

②채권 투자시에는 발행자의 신용과 무위험채권과의 금리차 및 유동성 확보 등을 고려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듀레이션을 조절하여 투자한다.

(13.11.29 본조 제목 개정)

**제 16 조(대체투자)** 대체투자는 투자자산의 다양성 및 비정형성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20.12.30 개정)

② (14.12.31 개정, 20.12.30 삭제)

**제 17 조** (20.12.30 삭제)

**제17조의2(기회자산)** ①단기자금은 안정성 및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전략투자는 중장기 투자정책을 구현하는 자산으로 운용한다.

(20.12.30 본조 신설)

**제 18 조(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는 보유 중인 금융자산에 대한 주가, 금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최소화 또는 수익 확보를 위하여 운용한다.(13.11.29 개정)

**제 19 조** (20.12.30 삭제)

**제19조의2(위탁운용)** 자산군에 대한 위탁운용은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고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자산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다.(20.12.30 본조 신설)

**제 20 조** (20.12.30 삭제)

**제20조의2(외환 관리)** 외환 관리는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의 변동성을 축소 하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0.12.30 본조 신설)

**제 21 조** (20.12.30 삭제)

**제21조의2(회원복지사업)** 회원복지사업은 투자에 따르는 수익·위험과 함께 회원복지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한다.(20.12.30 본조 신설)

**제 22 조** (20.12.30 삭제)

**제22조의2(외부자문)**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투자, 법률, 세무 및 기타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23 조** (20.12.30 삭제)

**제23조의2(유가증권 보관 및 대여)** ①유가증권은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유가증권의 취득·대여·처분에 따른 출납 및 관리업무는 소관 부서장이 담당한다.

③자산운용의 효율 제고 및 증식을 목적으로 보유 유가증권을 대여할 수 있다.

(20.12.30 본조 신설)

## 제 5 장 자산운용 성과평가 및 재원조달

제 24 조 (20.12.30 삭제)

제24조의2(사고방지) ①유가증권 운용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유 유가증권이 변조·분실 등 사고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즉시 매입처에 변제를 요청하고 투자원리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0.12.30 본조 신설)

제 25 조 (20.12.30 삭제)

제25조의2(자산운용 성과평가) ①성과평가는 실현된 투자의 성과를 목표와 비교·평가·분석을 통해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자산운용 성과는 자산운용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으로 평가하며 성과평가를 위한 수익률은 각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20.12.30 본조 신설)

제 26 조(외부 재원조달)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부로부터 퇴직급여율 미만의 저리 자금을 조달하여 운용할 수 있다. 다만, 퇴직급여율 이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수익원 다각화 및 수익증대를 위한 사업추진
2. 회원 급여금 지급 재원 부족
3. 기타 자금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②외부조달비용은 조달 약정시의 표면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③외부로부터 재원을 조달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합리적인 상환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2.30 본조 신설)

### 부 칙 (2010.11.25. 규정 제345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재무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사업개발규정 제14조”를 “자산운용규정 제16조”로 한다.



②부동산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사업개발규정 제14조를”을 “자산운용규정을”로 한다.

**제 3 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금융자산운용규정」, 종전의 「사업개발규정」, 종전의 「금융자산운용관리지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금융자산운용규정」, 종전의 「사업개발규정」, 종전의 「금융자산운용관리지침」에 따라 이뤄진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이뤄진 행위로 본다.

**부 칙** (2011. 11. 30 규정 제359호)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29 규정 제372호)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24 규정 제379호)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31 규정 제393호)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5. 4 규정 제410호)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 11. 규정 제452호)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30. 규정 제453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산운용규정

**제 2 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자산운용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개정규정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5. 28. 규정 제456호)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25. 규정 제462호)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6. 3. 규정 제470호)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